



행복한동행 비상하는남해

등록번호	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행복동행팀 장	복지정책과 과장	행정복지국 장	부군수	군수
한선미					
협 조					

2026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

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개·보수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,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

I 지원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
	세대	금액	세대	금액	세대	금액	세대	금액
계	10	50	5	45	5	41.9	5	39.8
신 축	-	-	-	-	-	-	-	-
개보수	10	50	5	45	5	41.9	5	39.8

II 추진계획

○ 지원근거

- 주거기본법 제3조의 7(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)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
○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8월

○ 예 산 액 : 39,862천원(군비)

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희망복지실현, 사회안전망 구축,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, 민간자본이전,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

- 사업량 : 5세대(예산 범위 내 조절 가능)
- 지원대상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
 -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
(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파악 필요)
- 지원내용 : 화장실, 주방, 방 내부, 지붕개량, 보일러 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

III | 지원방침

- 심사 기준표에 의해 대상자 선정
- 미선정 세대는 군내 봉사단체 등을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추진 예정

IV | 세부추진 일정

- '26. 1월 : 읍면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신청 접수
- '26. 2월 : 신청 대상자 현장조사 및 군 자체 심의
- '26. 2월 : 주거복지사업단 위탁 시행 계약 체결
- '26. 2월 :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
- '26. 2월 ~ 8월 : 사업시행 및 완료

V | 행정사항

- 복지정책과 : 주거복지사업단 위탁 시행 계약 체결
 - ※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따름
- 읍·면 : 이장회의,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, 전광판 등 사전 홍보

붙임 1. 신청서 1부.
2. 심사기준표 1부. 끝.